

## 2010년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공고

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콘텐츠 다양화 도모를 위해 “2010년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.

### 1. 사업목적

- ▶ 우리나라 방송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콘텐츠 다양화 도모 및 문화다양성 증진
- ▶ 한-EFTA(유럽자유무역연합)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부속서, 한-싱가포르 및 한-캄보디아 공동 제작협정에 따른 해외공동제작물에 대한 제작 지원

### 2. 신청대상

- ▶ 방송법 제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된 방송 사업자
- ▶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

### 3. 공동제작 대상국

- ▶ 정부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국(총 6개국)
  - EFTA 4개국(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), 싱가포르, 캄보디아

### 4. 지원내용

- ▶ 공동제작 대상국 국민(법인 포함)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
  - ※ 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 지원(자체인력 인건비, 자체시설 이용료 등은 제외)
- ▶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장르 제한 없음
- ▶ 공동제작 유형 : 교환형, 공동작업형을 대상으로 함.
  - ※ 국내 제작참여자가 단순 출자참여만 하는 형태는 지원 불가
- ▶ EFTA 4개국, 싱가포르, 캄보디아의 공동제작 준수 조건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

### 5. 지원규모 및 원칙

- ▶ 총 4편 제작지원으로 1편당 2.5억원 이내, 1사업자당 연간 총 5억원 이내(2편 이내)
  - 1편당 자체조달금이 지원 가능한 최대금액의 10%(2500만원)이상일 경우에는 1편당 3억원이내
  - 지원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
- ▶ 제작기간 : 계약일로부터 당해연도12월15일내에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
- ▶ 재원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

### 6. 계약방식 및 대상자 선정

- ▶ 계약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
  -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 제43조
  -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 준용

- ▶ 공동제작 사업계획서 평가 절차 및 대상자 선정 방법
  -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(회계예규 2200.04-158-3,2009.9.21)
  - 회계예규 제7조 : 기술능력평가(80점)과 가격평가(20점)
    - ※ 가격평가 대상 : 기술능력평가 68점 이상

## 7. 신청방법

- ▶ 제출서류
  - ① 방송콘텐츠 해외공동제작 지원 신청서
  - ② 사업수행계획서
  - ③ 사업자현황자료
  - ④ 상대국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의 공동제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사본 1부
  - ⑤ 방송사업 허가·승인·등록증 사본 1부
  -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- ⑦ 2009년 재무제표 사본 1부

## 8. 제출방법

- ▶ 제작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
- ▶ 제출부수 : 공문 및 제출서류 원본 1부, 제출서류 사본(개별 제본) 10부
- ▶ 접수기간 : 2010.1.8.(금) ~ 1.22.(금) 18:00까지
- ▶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(마감일 소인분 유효, 단 1.25(월) 도착에 한함)
- ▶ 접수 및 관련문의
  - 방송통신위원회 국제기구담당관 담당주무관(02-750-1739)
    -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## 9. 기타사항

- ▶ 본 사업은 2010년 1월중에 출연기관과 협약체결 후 운영예정이며 출연기관 담당연락처 등은 추후 출연기관에서 공지예정임.
- ▶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지원 공고 예정임.

2010년 1월

**방송통신위원회**